

조선총독부의 기록수집 활동과 식민통치*

이 승 일**

1. 머리말
2. 조선총독부의 대한제국정부 공기록 수집·정리
3. 역사편찬과 기록수집
4. 맺음말

[국문초록]

현재까지 국가기록원을 비롯하여 각급 공공기관에 보존되어 있는 식민지 시기의 영구기록들은 조선총독부 기록관리활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공공기관의 영구기록들이 조선총독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하였거나 수집한 것으로 해방 이후 미군정에 의해 인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에 남아 있는 식민지 시기 영구기록은 기록의 완전성을 유지하지 못한채 극히 일부만이 파편적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당시의 업무 과정

* 이 논문은 『기록학연구』 제4호에 실린 필자 논문 일부를 수정하고 새롭게 내용을 추가한 것임을 밝힙니다.

** 국회기록보존소 기록연구사

을 복원하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것은 조선총독부의 평가선별 기준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폐기된 측면도 있으나 해방과 동시에 조직적으로 문서과 기록을 파기한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조선총독부의 수집정책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던 기록은 조직적 폐기를 모면하였으나, 수집정책에 따라서 역사기록의 범위와 대상이 달라졌다. 조선총독부의 각급 조사기관에서 관리한 역사기록들은 식민통치의 정보로 활용하거나 조선사 편찬을 위해 수집된 것이다. 그러나 조선총독부가 수집한 기록들은 한국사회를 기록화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식민통치의 목적이 우선되었기 때문에 파편성을 면할 수 없었다.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제도는 일본본국정부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었으나 조선의 역사기록 수집과 그 활용 과정에서 식민지적 특성이 잘 나타났다.

주제어 : 수집정책, 역사기록, 기록관리

1. 머리말

일제 식민지 시기의 기록관리 활동과 기록정책의 분석은 현존하는 조선총독부 공문서의 성격과 한국의 역사기록이 식민지 시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관리되어 현재까지 보존되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록학계 및 역사학계 등에서는 주로 조선총독부에서 생산된 공식 기록물을 중심으로 식민지 기록관리제도를 연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식민지 시기의 기록관리제도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선총독부가 생산한 기록과 한국인들이 생산한 기록 모두를 연구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정책¹⁾에는 과거 한국정부와 한국인들이 생산한 역사기록들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입장도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정책은 통치기구에서 생산된 공식 기록물에 대한 정책과 한국인이 생산하였으나 조선총독부가 수집 관리한 수집기록물에 대한 정책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선 조선총독부 공식 기구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조선총독부 본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각 소속기관이 그 표준을 참고하여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²⁾. 식민지 시기의 기록관리에 관한 규정은 조선총독부처무규정에 기술되어 있는데 조선총독부처무규정은 조선총독부 전체 부서에 적용된 것이 아니라 본부에만 적용되는 것이었다³⁾. 조선총독부의 소속기관은 본부의 처무규정을 참조하여 각자 기록관리규정을 설치하였고 영구기록도 독립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체제였다. 따라서 기록관리의 핵심적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분류, 평가, 이관방법, 목록기술, 폐기 등도 기관이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 이와 같

- 1) 현대적 의미에서의 기록관리정책은 사회에서 생산된 공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 통제, 처분, 보존, 활용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지침이라고 말할 수 있다.
- 2) 조선총독부 공문서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재순, 「일제의 공문서제도 장악과 운용의 실제」 『한국문화』, 16, 1995.; 이승일 「조선총독부 공문서제도」 『기록학연구』, 9, 2004.; 박성진 「일제하 조선총독부의 공문서 분류방식」 『기록학연구』, 5, 2002.; 박성진, 「조선총독부의 공문서 보존기간 책정기준」 『기록보존』, 15, 2002.; 배성준, 「조선총독부 공문서 분류체계의 복원」 『기록학연구』, 9, 2004.
- 3) 조선총독부처무규정은 기록관리만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 각 행정부서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복무규정들이 설치되어 있다.

은 법령 체계 속에서는 전체 사회상을 반영하는 영구기록관리정책을 도출할 수가 없으며 단일 기관 차원의 기록관리만이 존재할 뿐이다.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 규정의 또 다른 특징은 기록생산과 유통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⁴⁾. 그것은 첫째, 조선총독부의 행정 문서주의라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 기록의 역사적 가치에 관한 관료의 인식이 낮았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에서는 모든 행정행위가 ‘문서’라는 매개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서 생산 및 활용 단계의 규정을 자세히 나열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총독부는 문서의 생산 절차와 방법을 표준화하였고 기록의 생산과 관련된 세부 규정들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행위를 통제하려 하였다. 이를 반영하듯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 규정도 준활용 단계, 영구보존 단계에서의 규정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다.

한편, 조선총독부는 식민통치의 필요에 따라 일본본국 정부의 문서관리체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강한 수집정책을 수립하였다. 다만 조선총독부에 의해 국가적 규모의 기록수집이 진행되었으면서도 사회적 차원의 기록화 관점으로 수행되지는 못하였다. 오로지 조선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정보를 획득하거나,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동화하기 위하여 식민지 역사를 재해석하는 등 통치행위의 일

4) 기록의 생산과 관련된 조선총독부공문서규정은 총17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와 소속관서에 적용된다. 공문서규정이 조선총독부 전체에 적용하는 표준 규정이 된 이유는 조선총독부의 각종 공문을 표준화하여 업무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였다. 공문서규정은 사실상 기록관리 법령이라기보다는 공문의 생산과 유통에 관련되는 것으로 문서의 양식을 표준화하여 각 행정기관간의 문서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다. 공문서규정은 처무규정과 결합되어 현재의 사무관리규정과 매우 흡사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환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기록관리 대상과 목적의 차이는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의 차이로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현대에는 국립기록보존소가 기관 기록물과 수집기록물을 통합 관리하는 경향이 있으나, 식민지 시기에는 조선총독부 문서과가 기관 기록물 관리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에 반하여 대한제국 시기의 공기록 및 조선인들의 역사기록(archives)은 취조국, 참서관실, 중추원, 조선사편수회 등의 기관에서 관리하였다. 일제 지배자의 입장에서는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기록이 아니었고, 일본인의 기록도 아닌 조선인이 과거에 생산한 기록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관 기록물의 경우에는 기록생산자 중심의 논리가 개입되었으나, 기록의 수집·활용 단계에서는 해당 기록정보를 이해하고 가공할 능력이 있는 역사학자, 전직관료, 한문학자들의 참여가 대폭 확대되었다.⁵⁾ 또한 기록의 분류와 평가에서도 기관 기록물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이 시도되었다.

이 논문의 주제인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정책은 한국사회의 전체상을 기록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식민통치의 필요성에서 수립되고 유지되었다. 일제는 식민지 초기에는 기관 기록물을 업무참고 및 행정적 가치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관리하였고, 이의 연장선상에서 대한제국 정부가 생산한 공문서들을 정리, 보관하는 작업에 집중하였다. 조선총독부가 대한제국 정부의 기록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한국을 식민지 지배하기 위해 한국 사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였고, 지배에 필요한 중요 정보들은 모두 대한제국 정부가 생산한 공식 기록물들에 있

5) 조선총독부의 대표적인 기록수집 활동은 구관조사, 고적조사, 규장각 도서 정리, 토지조사사업, 역사편찬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1915년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단계는 조선총독부 기록관리정책에서 중요한 전환점의 시기였다. 이 시기에 접어들면서 기록은 단순히 지배를 위한 정보 활용의 측면에서 벗어나 영속적 지배를 위하여 한국인의 역사기록을 해석, 편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즉, 역사의 편찬이 식민지 행정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면서 조선시대의 기록 뿐 아니라 중세, 고대시기의 기록까지 관리 대상으로 설정되었고, 역사편찬을 계기로 조선총독부의 행정목표에는 기록 수집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었다.

2. 조선총독부의 대한제국정부 공기록 수집·정리

식민지 기록관리의 특징은 일부 영역에 국한되지만 강력한 기록수집에 있었다. 특히 조선총독부의 고기록(古記錄) 수집정책은 조선 재래의 기록물들을 단순히 수집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기록물들을 생산하면서 수집 관리하는 것에 있었고⁶⁾,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민간 기록물의 수집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수집활동은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추진되었다. 한국의 전직 관료들을 통하여 인적인 차원에서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으나 한국사회에 대한 기본

6) 조선총독부는 관습조사사업을 실시하면서 조선의 고기록을 수집하였고, 이와 함께 조선관습을 조사한 방대한 양의 조사보고서를 생산하였다. 이 당시에 수집·생산된 조사보고서류는 국사편찬위원회에 보관되어 있다.

적인 정보는 아무래도 기록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선총독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식민통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을 생산, 수집하는 방식도 취하였다.

식민지 초기 조선총독부의 기록물 수집정책은 대한제국 정부 공문서의 이관 및 조선왕조의 각종 중요 기록물들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에 집중되었다. 그것은 대한제국 정부의 각종 기록들을 통하여 한국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식민통치의 기본 자료로 쓰기 위해서였다.

1910년 한국병합 이후 조선총독부는 법전조사국을 폐지하고 취조국을 설치하였는데, 취조국은 법전조사국의 사무를 이어받아 지속해서 관습조사를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⁷⁾ 취조국은 행정상 각반의 시설에 자료를 제공하고 사법재판의 준칙이 될만한 관습을 제공하고 동시에 조선인에게 적합한 법제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해, 조선 전역에 걸쳐서 각지의 ‘관습’을 조사하고 ‘전적(典籍)’을 섭렵하여 제도 및 관습의 연원을 탐구하기로 하였다.⁸⁾ 취조국이 개설되면서 조선총독부는 본격적으로 조선 재래의 고기록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⁹⁾ 취조국은 대한제국 정부의 기록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에 집중하였는데, 이 중에서도 기록의 활용을 위한 검색, 분류, 보존 쪽에 관심을 갖고 진행하였다. 그것은 식민행정의 참고로 활용가치가 대단히 높았기 때문이었고 활용을 위한 접근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¹⁰⁾

7) 「朝鮮總督府取調局官制 (1910년 9월 30일 칙령 제356호) (公文類聚·第三十四編·明治四十三年·第五卷·官職門四·官制四(朝鮮總督府))」

8) 朝鮮總督府中樞院, 『朝鮮舊慣制度調查事業概要』, 1938, 23쪽.

9) 이 작업은 조선총독부 본부 및 소속기관이었던 취조국(取調局), 참서관분실(參事官分室), 중추원(中樞院) 등으로 이어지면서 지속되었다.

10) 취조국과 참서관실의 기록관리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인용하였다. 이승일, 「조선총독부의 ‘조선도서 및 고문서’의 수집·분류 활동」 『기록학연

일제는 1910년 8월에 대한제국을 강점하기 직전에 홍문관(弘文館), 집옥재(集玉齋), 시강원(侍講院), 북한산 행궁(行宮)과 정족산 사고(史庫) 등에 소장되어 있던 도서를 궁내부로 이관하였다. 곧 이어 1911년 2월에는 궁내부가 소장하고 있던 도서를 조선총독부의 도서로 점유하기로 결정한 뒤, 1911년 6월에 조선총독부 취조국이 인수하였다.¹¹⁾ 그리고 이를 계기로 취조국은 통감부 및 대한제국 정부의 각종 공기록, 궁내부로부터 이관받은 기록, 규장각에서 관리하던 도서¹²⁾ 등을 ‘조선도서’로 규정하여 취조국이 정리·보관할 것을 천명하였다.¹³⁾

식민지 초기 조선총독부는 조선 왕실 역대의 기록물 및 圖書를 약 148,000 여책으로 파악하고 있었다.¹⁴⁾ 조선총독부는 조선 왕실의 자료를 인계받아, 취조국으로 다시 이관하였고, 취조국은 곧바로 도서의 조사에 착수하였다.¹⁵⁾

취조국은 ‘朝鮮圖書整理ニ關スル件’에서 舊통감부 및 舊한국정부로부터 인계받은 조선도서 일체를 정리·보관하기로 결정하였고¹⁶⁾, 도서 정리를 위해서 事務官 1명, 屬 2명, 雇 3명, 조선인 5명을 두었다. 그리고 민간에 존재하는 조선도서를 수집·정리하여 朝鮮書圖書館 설립을 계획하였다.¹⁷⁾ 위 서류는 조선 재래 도서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및

구』, 4, 2001.

11) 김태웅, 「일제 강점 초기의 규장각 도서 정리 사업」 『규장각』, 18, 1996, 176쪽.

12) 취조국에 의해 관리 대상으로 규정된 ‘도서’는 현대적 의미에서의 ‘도서’만이 아니라 舊한국정부의 공문서, 통감부 공문서, 황실관계 기록, 규장각 도서, 활자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13) 『圖書關係書類綴(규26764)』

14) 『圖書關係書類綴(규26764)』

15) 『圖書關係書類綴(규26764)』

16) 『圖書關係書類綴(규26764)』

17) 『圖書關係書類綴(규26764)』

보존을 계획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조선도서의 수집 범위와 정리·보존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취조국 단계의 기록관리 활동의 특징은 舊統감부 및 舊한국정부로부터 각종 기록을 이관받아 목록을 작성하는 작업에 집중한 것이다. 이 당시 취조국이 작성한 圖書臺帳은 朝板圖書目錄(규26729, 규26730)·唐板圖書目錄(규26756, 규26765)·部別圖書目錄(규26742, 규26754)·別庫藏置缺本目錄(규26704, 규26790)·未整理目錄(규26743) 등이었는데, 이것들은 도서정리 준비를 위한 筆寫本臺帳에 불과한 것으로, 본격적인 圖書整理臺帳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¹⁸⁾

한편, 이 시기에 板木鑄字雜品 등은 종래의 서고 내에 殘置하였을 뿐, 별다른 관리를 하지 못했다.¹⁹⁾ 취조국은 1911년부터 圖書整理附屬事業으로서, 조선총독부가 소장하고 있던 모든 朝鮮圖書를 대상으로 해제를 작성할 계획을 세웠지만, 1년 만에 폐지되어 사업은 참서관실로 이관되었다. 이상의 취조국의 기록관리 활동은 舊한국정부의 각종 공문서류와 조선의 ‘王室所藏記錄物’, 각종 도서들을 이관받아 정리에 착수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왕실기록물에 대한 본격적인 정리와, 민간에 존재하는 古文書들에 대한 수집 및 분류는 참서관실 단계에서 구체화되었다.

1912년에 참서관실은 종친부(宗親府) 서고에 있던 도서 전체의 목록 및 대장을 작성하였고, 결본도서(缺本圖書)를 진보(填補)하고, 봉화오대산 사고본의 정리 계획을 세웠다.²⁰⁾ 그리고 1913년에는 圖書의 卷冊

18) 愼鏞廈, 「奎章閣圖書의 變遷過程에 대한 一研究」 『奎章閣』 5, 1981, 74쪽.

19) 『圖書關係書類綴(규26764)』

20) 1913년에는 오대산사고에 있었던 實錄 439책을 동경제국대학에 기증의 형식

數·著者·著作年時·版種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새롭게 구입한 도서를 합하여 조선 재래의 분류 방식이었던 四庫全書의 예를 따라서 경·사·자·집(經·史·子·集)의 4부로 분류하고 목록을 작성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당시의 정리가 印刷地 및 謄寫地를 기준으로 했다는 점이다. 즉 도서를 크게 ‘朝鮮本’과 ‘支那本’으로 구분하고 著作編纂者를 조선인·중국인 불문하여, 중국도서로서 朝鮮版인 것 그리고 조선에서 등사한 것은 모두 朝鮮本으로 집어넣었다.²¹⁾ 그리고 圖書에 번호를 붙이지 않고 단순히 架를 정해서 그 위에 배열한 것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의 도서 정리는 불충분하였기 때문에 圖書整理係員을 두어서 재정리에 착수하였다.

참서관실은 1913년 7월부터 조선도서 및 중국도서의 재정리에 착수하였고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즉 도서 정리는, ① 조선도서 및 중국도서의 구분 ② 도서대장의 작성 ③ 번호지의 첨부(1부마다 번호를 붙이고, 여러 부일 경우에는 小別番號를 붙여서 1부마다 번호지를 첨부한다.) ④ 특별취급본의 결정과 목록의 작성 ⑤ 카드의 작성(1부마다 작성) ⑥ 카드대장의 작성 ⑦ 부문별 목록의 작성 ⑧ 서가견출장의 작성 ⑨ 장정의 수리 등의 순서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①번 단계의 조선도서와 중국도서의 구분이 기존과는 달랐던 것은 기존의 도서 정리 방식이었던 印刷地 및 謄寫地를 기준으로 하여 出版地에 의해서 朝鮮本과 支那本을 구분하던 방식에서 탈피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즉, 이 당시에는 編著者가 조선인인지 중국인인지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편저자가 조선인이면 ‘朝鮮圖書’라고 칭하고,

으로 유출하였다.

21) 朝鮮總督府中樞院, 『朝鮮舊慣制度調査事業概要』, 1938, 26쪽.

편저자가 중국인이면 ‘支那圖書’라고 칭하였다. 도서대장을 작성하는 데에도 ‘朝鮮圖書臺帳’ 및 ‘支那圖書臺帳’으로 구분하여 조선도서와 중국도서와의 혼동을 피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정리 방식을 바꾼 이유는 朝鮮圖書館으로서의 특색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다.²²⁾ 이상의 변화를 통해 참서관실에서는 조선의 독특한 도서체계에 맞추어 도서를 정리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참서관실에서는 대한제국의 공기록들도 조선 제래의 도서체계에 맞추어 분류 관리하였던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참서관실에서는 카드작성을 제외한 다른 것은 모두 1914년 6월말까지 완료하였고, 동년 7월부터 카드의 작성에 착수하였고 대략 1915년 말에 일단 정리를 마쳤다.²³⁾

한편, 조선총독부는 圖書整理係員외에 圖書修繕을 위한 係員을 따로 임명하여 圖書修繕을 시도하였다. 당시 도서의 정리 및 修繕의 事務는 事務官 小田幹治郎이 주임이 되어 방침을 정하였고 園木末喜·中里伊十郎 등이 종사하였다.²⁴⁾ 당시 도서의 蟲害가 심했기 때문에 1914년 10월 13일에 圖書防蟲心得과 圖書出納心得²⁵⁾을 제정하였고, 1914년 10월 5일에는 參事官分室防盜火心得²⁶⁾이 제정되었고, 1915년에는 燻蒸室을 이용하여 殺蟲도 시행했다. 그리고 도서의 閱覽 및 貸出에 관해서는 1916년 6월 취급방법²⁷⁾이 정해졌고 1922년 10월 훈령 제50호²⁸⁾로써 古圖書의 보관에 관한 사항은 참서관실에서 학무과로 이관

22) 『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關係書類(一)』

23) 朝鮮總督府中樞院, 『朝鮮舊慣制度調查事業概要』, 1938, 26쪽.

24) 朝鮮總督府中樞院, 『朝鮮舊慣制度調查事業概要』, 1938, 27쪽.

25) 『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關係書類(一)』

26) 『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關係書類(一)』

27) 朝鮮總督府中樞院, 『朝鮮舊慣制度調查事業概要』, 1938, 27쪽.

되었다. 그리고 1930년 8월에 이 도서는 귀중한 조사자료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不燃書庫가 등장하기까지 京城帝國大學에 보관되었고, 1930년 10월말에 인계되었다.²⁹⁾

한편 식민지 초기 조선 고기록 수집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입장은 1913년 2월 정무총감 통첩을 계기로 크게 변화하였다. 그것은 1913년 단계에 이르게 되면 대한제국 정부의 공기록의 등록과 분류 등이 거의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 활동이 舊한국정부로부터 이관받은 기록물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에 국한되었다면, 1913년 정무총감 통첩을 계기로 조선총독부가 수집하려 했던 문서의 종류가 크게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즉 이 통첩에서 수집 대상으로 삼았던 조선의 古書는 '印本과 寫本을 불문하고, 민간에 존재하는 1894년 이전의 모든 圖書'로 규정되었던 것이다. 또 이 때부터 조선총독부는 문서 형태의 기록물 뿐만 아니라 金石文·冊板 등 다양한 형태의 고기록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이 통첩을 계기로 각 지방장관과 경무부장들은 지방에 있는 조선 재래 고기록들의 소재·종류·소유자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 1913년 정무총감 통첩은 조선총독부가 수집 대상으로 삼았던 조선 재래의 기록물의 범위와 수집 절차에 대해 밝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28) 朝鮮總督府中樞院, 『朝鮮舊慣制度調查事業概要』, 1938, 27쪽.

29) 한편, 조선총독부는 민간의 도서외에 조선의 각군 읍지에 대한 수집도 병행하였는데, 조선의 읍지는 참사관분실의 보관분과 내무부로부터 인계받은 것을 합해서 정리를 하였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각도로 통첩을 보내어 등사를 하려고 하였다.

***別紙**

一, 朝鮮圖書의 수집

印本과 寫本을 불문한다. 또, 그 종류 여하를 묻지 않는다. 寺院 鄕校 養士齋 書院 書堂 기타 민간에 존재하는 朝鮮圖書로서, 1894년 이전의 著作 또는 印刊에 관련되고 別冊圖書目錄에 게재되지 않은 것을 조사하여, 다음의 방법 중에서 어느 것에 의할 수 있는 것인지를 交涉決定하여, 別紙의 記載例에 의해 통보한다.

二, 金石文의 蒐集

碑文 鐘銘 기타의 금석문으로서 다소 연대를 경과하여 史料로서 참고의 가치가 있는 것을 조사하고 그 종류·소재 및 소유자를 통보한다. 위 금석문은 다음의 구별에 의해 拓本 또는 寫本을 送付한다.

a. 탁본 : 碑文 鐘銘類로서 手拓을 취할 수 있는 것은 각기 수탁

2통

b. 사본 : 탁본하기 어려운 것은 그 사본 2통

三, 版木·扁額 등의 조사

官衙 鄕校 養士齋 寺院 書堂 殿祠 壇閣 樓亭 기타 民家 등에 존재하는 書籍 經文 地圖 등의 版木 柱聯 등을 조사하고 그 종류·소재·소유자 등을 통보한다.

편액류로서 그 記文史料 또는 건물의 연혁을 아는 재료일 수 있는 것은 그 全文을 등사하여 첨부한다.

四, 經文 및 기록 등의 조사

사원 기타 소장에 관계된 經文, 기록 등으로서 귀중한 것이라면, 그 종류·내용의 梗概 필자 작성연대 印刊地 등을 조사하여 통보한다.

앞의 1913년 통첩의 별지는 당시 조선총독부가 수집 대상으로 삼았던 조선 도서의 종류와 수집 원칙 및 방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寺院·鄕校·養士齋·書院·書堂 등의 표현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지방 관청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닌 민간기관에 속해 있는 민간기록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13년에 조선총독부가 수집 대상으로 삼았던 조선도서는 ‘1894년 이전의 저작’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894년 이후의 저작은 현행 도서로 취급하여 수집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1913년 이전의 조선총독부의 기록물 조사는 주로 조선 왕실의 기록물에 대한 것이었지만, 1913년 정무총감의 통첩은 왕실의 기록물 수집만이 아닌, 민간에 존재하는 각종의 도서와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의 수집을 지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단 수집 대상으로 설정된 도서는 印本과 寫本을 불문하여 모두 조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가 기록물들은 한국병합과 함께 일본의 소유로 귀착되었지만, 민간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수집의 방법이 문제였다. 결국 민간에서 소장하고 있던 기록물의 수집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법으로 수집하기로 하였다.

- a. 買入 : 圖書의 소유자가 賣渡를 승낙치 않으면, 代價 등에 관해 교섭을 거쳐서 구입의 절차를 예정하고 매입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는 것을 記入할 것
- b. 寄附 : 圖書의 소유자가 매도를 바라지 않고, 오히려 기부를 바랄 경우에는 기부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입할 것
- c. 寄託 : 圖書의 소유자가 매도를 바라지 않고, 또 기부를 바라지

않는 경우 만일 기탁을 허락할 때는 기탁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입할 것

- d. 謄寫 : 圖書의 소유자가 前3항 중의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을 경우에는 등사를 위해 일시 차용의 교섭을 하고, 등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입할 것³⁰⁾

이상의 언급을 통해 당시 조선총독부는 민간에 존재하는 조선 도서의 수집은 구입·기부 및 기탁·등사 등의 방식을 통해 해결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선총독부가 원본 및 사본을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사를 통해서라도 입수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수집된 것은 56종 191책이었다. 그리고 고문서들은 종류를 불문하고 참고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그것을 수집하기로 하였고, 수집이 불가능한 것은 등사를 통해서 수집하였는데 그 수는 67종에 달하였다.

참사관실의 기록수집 방법은 기록 소유자에게서 매입, 기탁, 기부를 받는 것이 주된 방법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조선인들의 저항에 부딪혀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수집방법은 조선사편수회 단계에서 완화된 방식으로 등장할 수 밖에 없었다.

참사관실 단계에서 비로소 민간에 존재하는 조선의 고기록 수집을 명시화하였으나 사실상 성과는 많지 않았다. 그것은 행정목표의 부재와도 관련이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역사편찬을 시도하면서 보완되기에 이르렀다.

30) 朝鮮總督府中樞院, 『朝鮮舊慣制度調查事業概要』, 1938, 42쪽.

3. 역사편찬과 기록수집

일반적으로 기록의 활용은 기록관리기관이 보존하고 있는 기록에 대한 국민의 접근을 전제로 하게 된다. 그러나 식민지 시기에는 국민에 대한 기록접근이 명시적으로 천명되지 않았다. 단지 행정참고를 위하여 관료들의 접근이 허용되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기록관리규정은 행정기록에 대한 접근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식민지 시기에는 기록 활용의 주체가 식민통치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이었다. 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기록을 활용하는 것이 강조되었고 국가적 규모의 역사편찬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사료의 수집이 동반되었다.

(1) 중추원 단계

조선총독부 소속관서 중에서 역사기록의 수집을 담당한 부서는 취조국, 참서관실, 중추원, 조선사편수회 등이었다. 이 중에서 취조국, 참서관실, 중추원은 古記錄 정리 뿐만 아니라 조선의 법제를 제정하기 위한 각종 관습 및 제도조사 업무도 동시에 맡고 있었다. 취조국과 참서관실 단계에서는 대한제국의 기록물들을 정리, 보관하는 작업에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료수집의 기능은 크게 강조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중추원으로 구관조사 업무가 이관된 이후, 중추원에 역사편찬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사료수집에도 일정하게 무게가 실리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참서관실 단계에서의 기록관리가 일정하게 완료

된 1915년 단계에서는 조선의 古記錄을 활용하는 쪽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그 방향은 조선사를 일본인들의 입장에서 재해석하여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동화하기 위해서였다.

1915년 이후 조선사 편찬 사업이 본격화되자 조선총독부는 조선 재래의 도서 및 고문서들에 대해 ‘史料’라는 용어를 빈번하게 쓰기 시작하였고, 그것은 조선총독부가 조선 재래의 기록물들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 관점이 개입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고문서 해제와 조선사 편찬을 계기로 조선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서 조선총독부는 조선인을 동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작업에도 착수할 수 있었다.

일제는 이러한 점을 중시하여 中樞院職員擔當事項 중에서 첫째 사업을 역사편찬에 두었고, 참서관 副申에도 역시 조선사 편찬을 중추원 사무 중에서 첫 번째로 들고 있다.³¹⁾ 중추원은 1915년 5월에 참서관실로부터 사무를 인계받아 동년 7월에 조선사 편찬에 착수하였다. 원래, 조선총독부는 1917년 6월까지 약 2개년에 완성하기로 결정하였지만, 예산상 1916년 1월부터 자료 수집에 착수하였고, 1916년 3월에는 京都帝國大學 교수인 三浦周行, 동대학강사 今西龍 및 동경제국대학 조교수 黑板勝美 3명을 촉탁으로 하여, 1916년 7월에 다음과 같은 조선반도사 편찬의 요지를 정해 발표하였다.

이번 중추원에 命하여 朝鮮半島史의 편찬을 하였지만, 이 역시 民心薰育의 一端에 도움이 되는 趣旨에 다름 아니다.(중략) 조선인은 다른 식민지의 野蠻半開의 민족과 다르고 讀書屬文에서 감히 문명인에 열

31) 朝鮮總督府中樞院, 『朝鮮舊慣制度調查事業概要』, 1938, 137쪽.

등한 바가 아니다. 고래 史書가 존재하는 것이 많고, 또 새롭게 저작된 것이 적지 않다.³²⁾

이상과 같은 조선반도사 편찬 요지를 통해 조선 문화에 대한 일제의 이해의 정도를 엿볼 수 있다. 즉 1916년 단계에서 일제는 조선사회가 다른 식민지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학문적·문화적 산물의 존재도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취조국·참사관실에서 실시했던 조선도서 및 고문서의 광범위한 수집과 해제 작업을 통해서도 획득되었고, 일제는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조선인을 적극적으로 동화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와 함께 박은식이 저술한 한국통사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위하여 새롭게 조선사를 편찬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들은 소위 “舊史의 금압 대신 공명적확한 史書로써 대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파악하였던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실에 근거한 역사서술을 강조하였다.

조선총독부가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주목한 것은 역시 ‘기록’이었다. 중추원에서는 조선사편찬을 위해 1917년에 史料의 수집에 힘을 기울였는데, 이 당시 사료수집의 항목과 편찬서목은 다음과 같다.

32) 朝鮮總督府中樞院, 『朝鮮舊慣制度調査事業概要』, 1938, 141-143쪽.

〈표 2〉 사료수집 구분

第一	第二	第三-第六	第七第八	第九-第十一	第十二-第十八	第十九
檀君朝鮮 및 箕子朝鮮	三韓	三國	新羅	高麗	李朝	併合

<출처 : 朝鮮舊慣制度調查事業概要>

〈표 3〉 편찬자료의 書目

朝鮮史類(18종), 朝鮮地誌類(17종), 朝鮮文集類(11종), 朝鮮記錄及雜書類(118종), 支那史類(30종), 支那記錄及雜書類(530종), 日本史類(10종), 日本記錄及雜書類(90종), 조선에 관한 英書類(25종)·佛書類(31종)·獨書類(4종)
--

<출처 : 朝鮮舊慣制度調查事業概要>

편찬서목은 총 884종이었고 이 중에서 적당한 것을 골라서 자료를 발췌하기로 하였다. 수집 범위와 대상에서 차이가 있다. 참서관실 단계에서는 대개 갑오개혁 이전의 기록을 수집하려는 경향이 강하였으나 역사편찬을 하는 과정에서 수집의 범위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집 대상도 상세하게 규정되었다.

그리고 편찬과를 설치하여 반도사 편찬을 담당케 하였고, 1918년에 중추원사무분장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쳤다.

朝鮮總督府中樞院事務分掌規程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³³⁾

제1조, 조선총독부중추원에 조사과 및 편찬과를 설치한다.

제2조, 조사과는 舊慣調查 및 他課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맡는다.

33) 「1918년 11월 19일 훈령 제3호」

제3조, 편찬과는 史料의 수집·편찬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³⁴⁾

중추원에서는 1918년 말까지 사료수집에만 집중하였는데, 새롭게 발견된 것이 예상 외로 많아서 최초 편찬계획대로 일을 진척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사업 연한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2) 조선사편찬위원회 단계

조선총독부가 계획하였던 조선사는 규모가 방대하고 한국의 역사가 매우 길기 때문에 중추원 내의 소규모 사업으로는 조선사 편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그리고 역사 편찬의 기초자료인 古記錄, 古文書, 기타 사료적 가치가 있는 문헌이 인멸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총독부는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빠른 시일 내에 편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1922년 12월에 조선사편찬위원회규정³⁵⁾을 공포하고 조선의 역사에 조예가 깊은 조선과 일본인 학자를 선발하여 각각 고문과 위원직에 임명하여 조직을 완비하였다.³⁶⁾

조선사편찬위원회는 조선사 편찬만을 위한 독자적인 조직이었다. 중추원은 고유의 업무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방대한 역사 편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독자적인 조직을 따로 구성한 것이다. 조직 구성의 측면에서 중추원의 편찬과를 분리하여 조선사편찬위원회 기능으로 확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선사편찬위원회관제에서는 “조선총독부

34) 1918년 말까지 수집 발췌한 사료는 조선 도서 46종, 중국도서 72종이고, 이와는 별도로 동경 및 京都대학교수에게 委囑해서 발췌한 사료가 28책이다.

35) 「1922년 12월 4일 朝鮮總督府訓令 제64호」

36) 朝鮮史編修會, 『朝鮮史編修會事業概要』, 1938, 9-10쪽.

에 조선사편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조선사의 편찬 및 조선사료의 수집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위원장 : 정무총감 有吉忠一

고문 : 李完用, 朴泳孝, 權重顯

위원 : 長野幹 서기관장, 劉猛, 李秉韶, 洪憲, 玄采, 尹甯求, 李商永, 栢原昌三, 松井等, 鄭萬朝, 魚允迪, 今西龍, 李能和, 松井等, 栢原昌三, 小田幹治郎

간사 : 金東準, 稻葉岩吉

서기 : 金容廸, 葛城末治, 金子正潔³⁷⁾

조선사편찬위원회 위원들은 일본과 조선의 역사학자들을 중심으로 위촉하였다. 그것은 기록의 활용의 측면을 고려한 것이었다. 조선의 역사를 편찬하기 위한 각종 사료들을 분석 활용하기 위해서는 역사학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었다.

1923년 1월 8일에 제1차 조선사편찬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有吉忠一 위원장은 조선사편찬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대략 설명하였다.

조선전토의 모든 자료를 집대성하고 각 분야에 걸쳐 지극히 공평한 학술적 견지에 입각하여 그 작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는 이러한 태도를 근본 취지로하여 편찬업무에 임하지 않으면 안된다.³⁸⁾

37) 『朝鮮總督府職員錄(1923)』

조선사편찬위원회는 10년을 계획하여 추진하였다. 계획상으로는 3개년은 사료수집 그 다음 5개년은 사료수집과 편찬, 起稿에, 마지막 2개년은 초고 정리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단순히 정리하여도 사료수집에 8년을 할당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특히 有吉忠一은 이 사업이 학술적으로 공정성을 기하지 않으면 안되고 사료수집은 무엇보다도 이 사업의 출발점이 된다고 하여 사료 수집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제1차 위원회에서는 초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료수집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1. 편찬시대 이후의 것이라도 필요에 따라서 현대에 이른다.
2. 조선에 있는 것을 주로 수집하고, 내지와 중국, 그 밖의 것도 수집한다.
3. 문서류, 기록류, 金石文 등을 주로 하고 일반의 史籍도 포함한다.

조선사편찬에 강한 영향력을 미쳤던 黑板勝美는 “일반적으로 사료수집의 범위는 갑오개혁까지로 하였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현대”까지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사료의 공개도 추진”하였다. 그것은 자신들의 저술한 조선사의 공정성을 내외에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사료 중에서 이미 정리된 것을 수시로 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파악하였던 것이다.³⁹⁾ 黑板勝美는 동경제국대학에서 20여년간 대일본사료와 대일본고문서의 편찬업무에 종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었다.

38) 朝鮮史編修會, 『朝鮮史編修會事業概要』, 1938, 9쪽.

39) 朝鮮史編修會, 『朝鮮史編修會事業概要』, 1938, 15쪽.

한편, 제1차 회의 이후 사료 수집을 위해서는 조선총독부 지방관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923년 5월 19일에 도지사회의를 개최하여 사료보존에 관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有吉忠一 정무총감이 각 도지사들에게 조선사료 보존에 관한 훈시를 하여 협력을 요청하였다.

〈조선사편찬에 따른 古記錄, 文書 등 보존에 관한 건〉

현재 조총독부 학무과 분실에 소장되어 있는 古記錄類, 문서류 중에서 사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이나 더 나아가 모든 분야에 걸쳐 적어도 史實에 관계될 많나 가치가 있는 자료는 모든 위원들이 빠짐없이 수집하여 그 내용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각 관공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고기록류, 문서류 중에서도 사료로 될 만한 것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散逸될 염려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에 열거하는 고기록류, 문서류 등에 대해서 현존하는 것은 보존의 방법을 강구하고 나아가 민간에 산재해 있는 사료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모두 보존할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하기 바란다.⁴⁰⁾

아래의 도표는 조선사편찬위원회가 수집할 것을 계획하였던 기록의 유형이다.

40) 「朝鮮史編纂ニ付古記錄文書等保存ニ關スル件」 『古記錄文書蒐集ニ關スル件』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

〈표 4〉 수집대상 기록의 유형

유형	수집대상 기록의 종류
量案	量案道行帳, 行審錄, 改量導行帳, 改量正案, 續降等陳田正案, 馬上草, 驛田畚案, 各樣田, 畚案, 許頗陣改量大帳, 火田, 加耕, 查起, 還起 등 成冊類 및 事目類
戶籍	式年大帳, 軍案, 僧籍賤人案, 戶籍事目類
題決	所志 등에 관한 題決雜獄文案檢題類
立案	完文, 完議, 立旨, 節目類
文記	放賣文記, 分財文記, 典當文記
徵稅	作夫, 成冊, 俸稅冊, 災結成冊, 俵災成冊, 降結徵收正案, 年分概狀, 屯土徵收成冊, 上納案, 陳者案, 尺文, 磨勘成冊, 貢案, 進獻, 進上關係書
贈錄	邑事例等 類
邑誌	邑誌
	禮儀, 제도상의 器物號牌, 軍器, 樂器, 風器, 軍服, 鎰尺
	기타 사료가 될 만한 것

출처 : 古記錄文書蒐集ニ關スル件(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

5월 19일 회의에서 澤田 경상북도지사는 안동군 양반가로부터 고기록을 빌려가고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특별히 주의할 것을 요청하였다.⁴¹⁾ 또 다른 참석자는 경기도청으로부터 폐기 처분할 고문서류가 있는데 중추원에서 필요한 것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통지를 받고 조사한 결과 사료가 될만한 것이 많이 있어서 이를 넘겨받은 적이 있다고 발언하였다. 이것은 식민지 시기 지방관청에서 보관하고 있던 고기록들을 행정적 관점에서 폐기 처분하는 행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⁴²⁾ 이 회의를 계기로 중추원 서기관장 명의로 지방 관청에서 보존하는 舊記, 문서는 목록을 작성하여 조선사편찬

41) 「朝鮮史編纂委員會議事錄」 『朝鮮史編修會事務報告書』

42) 「朝鮮史編纂委員會議事錄」 『朝鮮史編修會事務報告書』

위원회로 보고할 것을 요청하는 의뢰서를 발송하였다.⁴³⁾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는 1923년 6월 5일에 각 도지사에게 ‘고기록 문서 수집에 관한 건’을 발하여 각 관공서와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舊記錄, 문서에 관한 목록을 양식에 맞추어 보고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각 도지사들은 10-12월 사이에 목록을 제출하였다. 해당 목록을 보면 각 지방관청과 개인이 보관하고 있던 古記錄의 수량과 기록의 유형 및 제목 등을 알 수 있다.⁴⁴⁾

그리고 제2차 위원회는 1923년 6월 12일 중추원에서 개최되어 조선과 내지의 민간에 소장된 사료 수집에 관해 다음의 사항을 협의하였다.⁴⁵⁾

1. 조선사편찬의 취지를 관민일반에 주지시켜 사료의 수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
2. 민간소장의 사료 차입 방법

1923년 제2차 위원회에서는 민간사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주된 협의 사항이었는데, 이 자리에서 고기록, 고문서를 소장하고 있는 곳이 서원, 사찰, 지방의 명문가 등인데 서원이나 사찰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 중에서 관헌이 가져가 버린 경우가 있고 명문가의 고기록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차입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차입한 사료는 몰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반환한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⁴⁶⁾

43) 「第2回朝鮮史編纂委員會會議錄」 『朝鮮史編修會事務報告書』

44) 『古記錄文書蒐集ニ關スル件(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 이 공문서철은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다.

45) 「第2回朝鮮史編纂委員會會議錄」 『朝鮮史編修會事務報告書』

이와 같은 언급은 당시까지 조선총독부에 의한 사료 수집이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 회의를 계기로 하여 민간에서 보존하고 있는 사료 차입의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일본본국의 동경제국대학 史料編纂掛에서 수행하고 있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이후 계속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여 史料探訪 문제를 협의하고, 수집된 사료는 조선총독 이하 각 위원들에게 전람시켰다.

(3) 조선사 편수회 단계

조선사 편찬의 목적은 이른바 ‘학술적이고 공평무사한 편년사를 편찬하는 것’이었으나 사료의 수집과 역사편찬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조선사편찬위원회의 조직은 본부 훈령에 근거하는 것으로 써 직원은 촉탁 신분으로 임용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를 모으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직원 처우 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 유능한 인재를 모으고 修史事業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이 판단되어 1935년 예산에 소요경비를 요구하였고, 이를 일본본국 정부가 인정하여 1925년 6월 6일 칙령 제218호로써 조선사편수회 관제를 공포하였다.

조선사편수회는 조선총독의 관리에 속하며 조선사료의 수집 및 편찬과 조선사의 편수를 담당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조선사편수회 관제가 공포되자 下岡忠治 정무총감이 회장에 취임하고 6월 25일자로 稻葉岩吉, 藤田亮策, 洪憲를 修史官으로 임명하고 수사관보, 서기

46) 「第2回朝鮮史編纂委員會會議錄」 『朝鮮史編修會事務報告書』

각 1명을 포함하여 직원을 임명하였다.

이후 조선사편수회는 지속적으로 회의를 갖고 기록수집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 조선사편수회가 역사편찬이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편찬과 관련된 각종 결정을 내렸으나 그 중에서 기록수집과 관련된 부분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차 위원회

1. 史料探訪 문제

- (1) 관청 측의 원조
- (2) 편찬 채방상의 주의점 및 경험
- (3) 사료의 내용과 채방의 방법
- (4) 채방구역

2. 사료의 정리 문제

- (1) 목록작성의 완성
- (2) 실록 및 등록의 정리

1932년 7월 21일 중추원에서 열린 제6차 위원회에서는 黑板勝美가 조선사의 편찬 뿐만 아니라 사료도 인쇄할 것을 주장하였다. 물론 사료출판의 건은 모든 사료를 출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만을 골라서 출판하자는 것이었다.

조선의 중요 사료는 구 규장각 장서를 비롯하여 이왕직, 조선총독부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고, 또 중추원의 반도사 편찬 당시부터 약간의 사료는 수집되었으나 아직까지 충분하다고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우선 사료수집에 전력을 기울여 1922년부터 인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장조사를 하기로 하고 1926년 12월에는 다시 이 작업을 한층 강화하여 史料探訪內規를 작성하고 조선 각도는 물론이고 일본, 만주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채방에 노력한 결과 그 연일수가 1938년 3월까지 2,800여일에 달하고 수집된 사료는 4,950책, 사진 4,500매, 文券·畫像·扁額·등이 453점에 달하였다.⁴⁷⁾

〈표 5〉 사료차입 지방별 책수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황해	평남	평북	강원	함남	함북	대마도	기타	합계
1923	·	·	·	·	·	35	·	·	·	·	·	·	·	·	·	35
1924	·	·	33	·	·	44	·	·	·	·	·	·	20	128	·	225
1925	59	25	15	2	·	7	31	·	·	·	·	·	·	·	·	139
1926	62	·	10	·	·	6	·	·	·	·	·	·	·	27	40	145
1927	100	15	·	·	169	50	·	·	·	·	83	146	·	·	5	568
1928	10	·	·	9	5	3	·	22	4	12	·	1	·	·	·	66
1929	352	191	183	82	15	109	·	·	·	·	·	13	·	·	51	996
1930	81	·	·	128	·	116	32	·	·	27	·	19	·	·	31	434
1931	16	·	·	1	·	·	133	·	·	30	·	·	·	·	·	180
1932	33	·	·	·	6	55	·	·	·	·	·	69	·	·	·	163
1933	59	·	·	·	15	82	·	·	·	·	·	22	·	·	·	178
1934	194	4	90	·	3	4	1	·	·	·	·	2	·	·	·	298
1935	205	·	·	·	·	14	·	·	·	·	·	262	·	·	·	481
1936	241	·	·	219	454	90	·	·	·	·	·	·	·	·	·	1,004
1937	15	·	·	·	23	·	·	·	·	·	·	·	·	·	·	38
총계	1,427	235	331	441	690	615	197	22	4	69	83	534	20	155	127	4,950

<출처 : 『朝鮮史編修會事業概要』, 93쪽.>

이보다 앞서 1923년 7월에 흑판 고문이 대마도에 사료채방을 위해

47) 朝鮮史編修會, 『朝鮮史編修會事業概要』, 1938, 89쪽.

출장갔을 때 조선에 관계되는 문서, 고기록류 등이 대마도주 宗伯爵에 상당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동년 8월 경에 栢原 위원을 출장조사 시켜, 그것이 조선사편찬의 참고자료로서 필요하다고 정됨에 따라서 1926년 예산에 구입비를 요구하여 후관 고문의 주선에 의해 1926년 7월 고문서류 67,469매, 고기록류 3,576책, 고지도류 34매, 古畫類 18권 및 53매를 구입하였다.⁴⁸⁾

조선사편수회에서는 각지에서 출장 수집한 사료를 조사, 정비하기 위하여 ‘복본류작성범례(復本類作成凡例)’를 정하여 중요한 사료는 등사하고 복본을 작성하여 편찬의 자료로 삼았다. 그 수가 1938년 3월까지 1,623책에 달하였다.⁴⁹⁾

〈표 6〉 복본 작성 책수 연도별 일람

연도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계
책수	421	67	235	144	117	78	173	69	120	2	24	28	145	1,623

복본류의 작성은 조선사편수의 직접사료가 될 만한 것을 중심으로 하되, 귀중사료를 주로 하고 유일한 사료→희귀사료→일반 귀중사료의 순서로 하되 지방채방사료는 차입 순서에 따라서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복본류 작성은 사료의 성질에 따라서 등사, 영사, 촬영, 모사의 방법으로 하기로 하였다. 특히 귀중한 사료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본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복본류에는 반드시 원본의 명칭을 따라서 명칭을 정하되, 원본에 명칭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48) 朝鮮史編修會, 『朝鮮史編修會事業概要』, 1938, 89-90쪽.

49) 朝鮮史編修會, 『朝鮮史編修會事業概要』, 1938, 94쪽.

는 적절하게 이름을 붙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완성된 복본에는 사료정리부 주임의 검인을 받도록 하였다.

<조선사편수회사료채방내규>에서는 사료채방을 일반채방과 부분채방으로 나누고, 일반채방은 일반에 걸친 것을 주로 하고, 반드시 특수한 사료만을 섭렵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우선 제반사료의 소재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부분채방은 특별한 조사연구와 특정사료의 채방을 위하여 행한다. 사료채방계획은 매년 초에 토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출발에 앞서 반드시 채방지역의 도청과 군청에 조회하여 사료수집 작업에 관한 지원을 의뢰하도록 하였다. 채방사료의 차입방법은 사료차람내규에 따르도록 하였고, 사료채방의 결과는 반드시 일정한 서식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⁵⁰⁾

사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지방사료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地方史料借入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단 조사원이 먼저 군청을 찾아, 관내에서의 사료의 존재 유무를 조사하고 군청원을 동반하여 史料所藏者와 면담하여, 사료를 閱覽調査상 목록을 작성하고, 귀중사료에 대해서는 먼저 차입방법을 교섭하였다. 그리고 所藏者의 승낙을 얻어 군청원과 連名의 假借覽證을 작성하여 사료를 차입하였는데, 귀임상 차람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다. 그리고 조선사편수회에서 정식의 차람증을 작성하여 관계군청을 경유하여 소장자에게 교부하여 차람의 확실을 기하였고, 차입사료는 기간내에 조사를 하고 등사 및 사진촬영상의 사상을 첨부하여 군을 경유하여 다시 소장자에게로 반환하였다. 만일 차람기간내에 조사가 완료되지 못했을 때에는 군을 경유하여 소장자에게로 연기의 승낙을 받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을 쓴 것은

50) 「朝鮮史編修會史料採訪內規」 『朝鮮史編修會事業概要』, 91쪽.

종래에 사료차입에 관해 여러 문제를 야기하였기 때문에 사료의 제공자에게 불안을 주고 조사에 불편을 느끼게 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⁵¹⁾

민간사료 차입의 방법에 대해서는 1913년 정무총감 통첩에서 4가지 방법에 의할 것을 명기하였으나 사실상 민간사료에 대한 강압적인 방식의 수집이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게 하는 언급이다.

〈표 7〉 복본의 작성 방법⁵²⁾

	범위	형식 및 체재	방법	비고
등사	1. 기록류, 史籍類 2. 원본이 방대할 경우 발췌 등사	1. 등사용지는 美濃紙 2. 10행 20자 등사	등사한 복본은 반드시 교정	복본의 주기 異本 校合
영사	1. 문서류 2. 기록류, 사적류 중에서 특수한 것 3. 印章類, 花押類		1. 원본형태를 그대로 영사 2. 朱筆, 朱印 등도 원본대로 살림	
촬영	1. 특별히 귀중한 사료 2. 타 방법으로 의거할 수 없는 것 3. 碑銘, 유물의 銘識, 文樣類로서 탁본가능한 것은 탁본영인	1. 사진 판형은 4절을 기준 2. 사진촬영, 탁본영인으로 구분	1. 사진에 반드시 臺紙에 첨부하고 거기에 사료 명칭, 소재, 크기, 촬영일, 촬영자명 기재	
모사	1. 문서, 畫像, 회화, 지도류 중 특히 중요한 것 2. 등사 영사 촬영 방법으로 의거하지 못하는 것	1. 원본과 똑같은 체재	1. 모사본도 사진촬영본의 예에 준하여 중요사항 기재	

51) 朝鮮史編修會, 『朝鮮史編修會事業概要』, 1938, 90쪽.

52) 「複本類作成凡例」 『朝鮮史編修會事業概要』, 94-101쪽.

이상과 같은 사료조사를 기초로 조선사 35권(24,000쪽)를 발간하였다. 그리고 조선사편수회에서 수집한 사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골라서 조선사료총간 20종, 조선사료집진 3질을 편찬하고 1938년 3월에 사업을 종료하였다.

조선총독부의 조선 고기록에 대한 조사와 관리는 식민통치의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조선에 대한 원활한 지배를 위해서는 조선인과 조선사회에 대한 상세한 이해가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조선의 기록물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일제는 나름의 기준과 방법으로 조선 고기록의 수집과 분류, 해제, 기록편찬 작업을 수행하면서 조선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갔고, 그것은 조선지배에 활용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조선에 대한 문화적 지배는 조선 고기록에 대한 지배를 통하여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8〉 식민지 시기의 기록수집 관련 기구의 변천과 업무

취조국 1910~1912	참서관실 1912~1915	중추원 1915~1938	조선사편찬위원회 조선사편수회
구관조사 (구)한국정부 공기록의 이관 규장각 도서정리	구관조사 규장각 기록정리 민간사료 수집	구관조사 역사편찬 민간사료 수집	역사편찬 민간사료 수집

4. 맺음말

현재까지 국가기록원을 비롯하여 각급 공공기관에 보존되어 있는

식민지 시기의 영구기록들은 조선총독부 기록관리활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공공기관의 영구기록들이 조선총독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하였거나 수집한 것으로 해방 이후 미군정에 의해 인계되었기 때문이다⁵³⁾.

그러나 공공기관에 남아 있는 식민지 시기 영구기록은 기록의 완전성을 유지하지 못한채 극히 일부만이 파편적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조선총독부 공문서의 잔존 현황을 본다면, 조선총독부에서 생산된 기록의 1%도 남아 있지 않은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아카이브즈의 신뢰성 측면에서도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당시의 업무 과정을 복원하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것은 조선총독부의 평가선별 기준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폐기된 측면도 있으나, 해방과 동시에 조직적으로 문서과 기록을 파기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기록의 폐기는 본부 뿐만 아니라 소속관서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조선총독부의 수집정책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던 기록은 조직적 폐기를 모면하였으나, 수집정책에 따라서 역사기록의 범위와 대상이 달라졌다. 조선총독부의 각급 조사기관에서 관리한 역사기록들은 식민통치의 기본정보로 활용하거나 조선사 편찬을 위해 수집된 것이다. 그러나 조선총독부가 수집한 기록들은 한국사회를 기록화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식민통치의 목적이 우선되었기 때문에 파편성을 면할 수 없었다.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제도는 일본본국정부의 체도를 도입한 것이었으나 조선의 역사기록 수집과 그 활용 과정에서 식민지적 특성이 잘 나타났다.

53) 조선총독부의 계획된 기록정책에는 해방 직후 자행한 기록물 파기도 포함된다.

ABSTRACT

Archives acquisition activities and rule of the colonial chosun government general

Lee Seung Il

Until now, archives of colonial era preserved in each public institution including National Archives & Records Service can be called as the results of colonial chosun government general's records management activities.

However, it is a fact that only the fragment of the archives from colonial era remained in public institutions without maintaining integrity of record. Therefore,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restore operations process of the era only with current records. It is somewhat because some records were institutionally abrogated by valuation selecting standard of colonial chosun government general, but it is more likely the result of systematic destruction of documents and records upon liberation.

On the other hand, although records that were being preserved by colonial chosun government general's acquisition policy escaped the systematic abrogation, the scope and target of the historical records were changed according to acquisition policy. Historical records managed by each inquiry agency of colonial chosun government general were collected to be used for fundamental information of colonial rule or compilation of Chosun history.

However, archives collected by colonial chosun government general could not escape partiality as a goal for colonial rule had priority over the standpoint for recording Korean society. Although records management system of colonial chosun government general was introduced from Japanese government's system, it clearly shows colonial characteristics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Chosun's historical records and its use.

key words: acquisition policy, archives, records management